

파트너(Suppliers & Contractors)를 위한

아동안전보호정책 요약본¹

세이브더칠드런 가치와 원칙

아동학대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해를 입거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과 아동착취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착취는 전 세계, 어느 사회에서든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직원, 관계자 및 파트너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직무 수행 과정과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책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을 약속합니다.

- **인식(Awareness):** 세이브더칠드런 직원과 관계자는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아동이 처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 **예방(Prevention):** 세이브더칠드런 직원과 관계자는 아동안전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과 우수 사례의 경험을 통해 아동이 처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 **보고(Reporting):** 아동의 안전에 있어 의심 상황이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발생시 이를 따를 것입니다.
- **대응(Responding):** 아동학대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¹ Guidelines: Simplified Child Safeguarding Policy for Suppliers & Contractors approved on 28 Feb 2014
(국문정리 18 July 2017)

세이프더칠드런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직원과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아동안전보호정책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이프더칠드런 직원, 관계자 및 파트너 기관은 결코:

1. 아동을 때리거나, 아동에게 신체적 공격 혹은 학대를 가하지 않습니다.
2. 해당 국가 법 혹은 관습에 따라 성년으로 인정받는 연령 혹은 동의와 무관하게 18세 미만의 아동과 성접촉 또는 성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며, 아동의 나이를 잘 못 알았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3. 어떤 형태로든 아동과 착취 혹은 학대로 간주될 수 있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4. 어떤 형태든 아동 학대가 해석될 수 있거나 아동을 학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5.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공격적이거나 학대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형태로 제안 또는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6.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7. 아동과 같은 방 혹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또한, 보호자 없는 집에서 아동과 함께 밤새 일하지 않습니다.
8.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9. 아동의 불법적이고, 위험하거나 학대적인 행동을 묵과하거나 동조하여 참여하지 않습니다.
10. 아동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창피를 주고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도 행하지 않습니다.
11. 아동을 차별하거나 특정 아동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12.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아동과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13. 스스로 아동학대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상기 조항이 위반된 경우 아동학대 의심 정황으로 인지하고 보고와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혹은 방임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세이브더칠드런 직원, 관계자의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급적 빨리 보고하여 대응 요청을 합니다.
- 아동을 지원하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 가능한 아동의 안전을 우선 확보합니다.
- 아동학대 의심 정황에 대해 세이브더칠드런 담당자(혹은 가능하면 상급자)에게 즉각 보고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관련 모든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세이브더칠드런 담당자(서지원 대리, 02-2126-444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